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
----------	-----

2023. 12. 14.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10.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계속적인 회계 처리 필요성이 있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개정한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선기)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이를 2028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